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
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재정비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면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법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허가등 신속처리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30조제3항)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도산 등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유를 명확히 함

나.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안 제31조)

산업기반시설 지원 범위를 특화단지의 운영뿐 아니라 특화단지의 조성까지 포함하도록 함

다.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를 규정(안 제38조의2)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함

라.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구체화(안 제39조의2)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재정, 금융,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 각종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함

마.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구체화(안 제42조의2)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특례를 요청할 수 있는 국가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전략산업등 분야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

바. 전문인력 양성사업 대상 고등학교 구체화(안 제43조제1항)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직업반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산업 인재양성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 구체화 함

사. 해외 우수인력을 발굴·유치 지원(안 제48조의2)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화 함

아. 업무의 위탁(안 제52조제2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의 접수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도산, 불법행위로 특화단지 조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31조의 제목 “(특화단지 운영 지원)”을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으로 한다.

제5장에 제38조의2, 제39조의2 및 제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법 제27조의2에서 정한 절차 외에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른다.

제39조의2(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한 재정, 금융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2. 기반조성, 인력양성,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3.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5. 기술개발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정보·자금 등의 지원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발전을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의 목적 및 이유 등을 적은 서류
2.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2조의2(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전략산업등 분야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4호”를 “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란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제6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지원)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활동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국내 기업·기관·단체의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홍보 활동 지원
2. 국내 기업·기관·단체의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
3. 국내 기관·단체의 해외 우수인력 수급실태 및 수요 분석·전망 등

에 대한 조사·연구 비용 지원

4.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5.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조기 정착을 위한 편의 제공
7. 해외 우수인력의 애로사항 및 고충 처리
8.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 마련
9.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의 접수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② (생략) <u><신설></u>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u> 1. <u>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u> 2. <u>사업시행자의 도산, 불법행위로 특화단지 조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u> 3. <u>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생략) 제31조(<u>특화단지 운영 지원</u>) ①·② (생략) <u><신설></u>	제31조(<u>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u>) ①·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u>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u>)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법 제27조의2에서 정한 절차</u>

<신 설>

차 외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른다.

제39조의2(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한 재정, 금융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2. 기반조성, 인력양성,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3.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5. 기술개발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정보·자금 등의 지원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발전을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관한

<신 설>

제43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신 설>

지원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의 목적 및 이유 등을 적은 서류
2.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2조의2(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전략산업등 분야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3조(전문인력 양성사업)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란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② 법 제35조제1항제5호-----

-----.

1. ~ 4.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지원)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활동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국내 기업·기관·단체의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홍보 활동

	<u>지원</u> <u>2. 국내 기업·기관·단체의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u> <u>3. 국내 기관·단체의 해외 우수인력 수급실태 및 수요 분석·전망 등에 대한 조사·연구 비용 지원</u> <u>4.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u> <u>5.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u> <u>6.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조기 정착을 위한 편의 제공</u> <u>7. 해외 우수인력의 애로사항 및 고충 처리</u> <u>8.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마련</u> <u>9.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제52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	제52조(업무의 위탁) -----

원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는 국가전략산업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1. (생략) <u><신설></u> <u>2. ~ 6.</u> (생략)	----- ----- ----- ----- ----- ----- ----- 1. (현행과 같음) <u>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의 접수</u> <u>3. ~ 7.</u>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4214